

의안번호	2207356
의 퇴 인	서영교 의원
회 답 일	2025. 2. 7.
추계번호	25B01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방송사업자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6억 8,200만원(연평균 25억 3,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 지원 (안 제89조)	2,437	2,486	2,535	2,586	2,638	12,682	2,536

주: 1. 현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제작 단가를 기준으로, 제작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 사업자의 변동 및 제작 단가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2(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신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함(제1항) 1.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4.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편성위원회의 위원은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46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 등)	이사회는 이사회장을 포함한 <u>이사 13명</u>으로 구성함(제2항) ※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함(제10항 신설)	의무규정
3	안 제50조의2(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하여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둬(제1항) 평가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구성함(제2항)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제7항)	의무규정
4	안 제87조(시청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함(제1항) <u>4.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신설)</u>	의무규정
5	안 제89조(시청자평가프로그램) 제4항 신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의2(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신설	—	미대상: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 제4조제4항 ¹⁾ 에 따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40개사)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고 있고, 해당 방송편성규약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중임.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일부는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 편성위원회 위원을 사내 구성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회의 참석비 등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방송사업자 자체 예산으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46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 등)	—	미대상: 개정안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회 회의의 녹음기록·영상통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며,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50조의2(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	—	—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현재 공사 이사회의 운영에는 국가의 보조금이나 출연금이 투입되지 않고, 전액 공사의 자체 재원 조달을 통해 운영중 — 한국방송공사는 현재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록 형태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2024년 속기 관련 비용 2,100만원 집행)
4	안 제87조(시청자위원회)	—	미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는 91개사로 현재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²⁾ ,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은 연간 약 700만원(위원 10명 기준, 회의 비용) 수준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방송사업자 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임

1)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4항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 지원 비용 추계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³⁾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 지원(안 제89조제4항 신설)
 - 현행법⁴⁾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해당 방송

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4. 10.)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0	2.0	2.0	2.0	2.0

4) 「방송법」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시청자평가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2] 시청자평가원 지원 현황(2024년)

해당 사업자(15개사)	지원내용	'24년도 예산
○ 지상파방송 4개사(KBS, MBC, SBS, OBS) ○ 종합편성PP 4개사(JTBC, TV조선, 채널A, MBN) ○ 라디오방송 4개사(서울교통방송, 부산영어방송, 광주 영어방송, YTN라디오) ○ 지상파DMB 1개사 (YTNDMB) ○ 보도전문편성PP 2개사(YTN, 연합뉴스TV)	방송사별 월 82만원	165백만원

주: 중앙방송사에서 제작한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지역방송사에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실제로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15개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개정안은 정부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6억 8,200만원(연평균 25억 3,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현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편당 제작 단가 600만원을 기준으로 함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의 지원율(방송사업자별 40~50%)을 참고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자의 수는 추계기간 중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
 - $600\text{만원} \times 15\text{개사} \times 52\text{주} \times 50\% = 23\text{억 } 4000\text{만원}$
 - 제작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

②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표 3]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 지원 관련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 지원	2,437	2,486	2,535	2,586	2,638	12,682	2,536

주: 1. 현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제작 단가를 기준으로, 제작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 사업자의 변동 및 제작 단가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현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제작 단가를 기준으로, 제작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 사업자의 변동 및 제작 단가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

[참고자료 1] 편성위원회 설치 방송사업자 현황

구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37개사)	중양지상파방송(3)	KBS, MBC, SBS
	종합편성PP(4)	JTBC, TV조선, 채널A, MBN
	지역MBC(16)	부산MBC, 대구MBC, 광주MBC, 대전MBC, 전주MBC, 춘천MBC, MBC충북, 제주MBC, 울산MBC, 강원영동MBC, 경남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포항MBC
	지역민방(10)	부산방송(KNN), 대구방송(TBC), 광주방송(KBC), 대전방송(TJB), 울산방송(UBC), 전주방송(JTV), 청주방송(CJB), 제주방송(JIBS), 강원민방(G1), 경인방송(OBS)
	라디오방송(3)	서울교통방송,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
	지상파DMB(1)	YTNDMB
보도전문편성 (3개사)	보도전문편성PP(2)	YTN, 연합뉴스TV
	라디오방송(1)	YTN라디오
계	40개사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참고자료 2] 지상파방송사업자 현황

구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33개사)	중앙지상파방송(3)	KBS, MBC, SBS
	지역MBC(16)	부산MBC, 대구MBC, 광주MBC, 대전MBC, 전주MBC, 춘천MBC, MBC충북, 제주MBC, 울산MBC, 강원영동MBC, 경남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포항MBC
	지역민방(10)	부산방송(KNN), 대구방송(TBC), 광주방송(KBC), 대전방송(TJB), 울산방송(UBC), 전주방송(JTV), 청주방송(CJB), 제주방송(JIBS), 강원민방(G1), OBS경인TV(OBS)
	라디오 방송(3)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 티비에스(tbs-eFM)
	지상파DMB(1)	YTNDMB
보도전문편성 (1개사)	라디오 방송(1)	YTN라디오
전문편성 (10개사)	교육전문(1)	EBS
	음악방송(2)	경인방송, 국악방송
	종교방송(5)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가톨릭평화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영어(1)	국제방송교류재단
	교통(1)	도로교통공단
계	44개사	—

주: 2024.12월 말 기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참고자료 3] 한국방송공사 2024년도 수입예산 내역

(단위: 억원)

재원 ⁵⁾	2024년 편성예산
수신료수입	4,407
방송광고수입	2,580
콘텐츠판매수입	3,801
협찬/캠페인수입	852
기타사업수입	482
사업외수입	328
합 계	12,450

자료: 한국방송공사

5) 「방송법」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5.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② 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36조(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3. 법 제54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4. 협찬 수입
5.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6.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7. 사채 또는 차입금
8. 전년도 이월금
9.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참고자료 4] 개정안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현재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개정안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 목록		현재 시청자위원회 운영 여부		
구 분		사업자 수	실제 운영 여부	국가 등의 출연·보조 여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SO)	LG헬로비전	23	○	×
	SKB(SO)	23	○	×
	딜라이브	16	○	×
	CMB	11	○	×
	HCN	8	○	×
	중소SO	9	○	×
	소계	90	○	×
위성방송	KT Skylife	1	○	×
합계		9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